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2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주취 조종 벌칙 기준 세분화 등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7.

3. 회 부 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

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Ⅲ. 검토의견

1. 주취 조종 처벌 기준 세분화 등(안 제61조)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 및 음주 측정 요구 불응에 따른 벌칙을 세분화하고 주취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주취조종 처벌기준 비교]

구 분		상세요건			벌칙수준
		총톤수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주취조종	$0.03 \leq$ 혈중알코올농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요구불응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주취조종금지위반(주취조종지시자포함)	5톤이상	1회	$0.03 \leq$ 혈중알코올농도 < 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leq$ 혈중알코올농도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leq$ 혈중알코올농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10년 이내)		$0.03 \leq$ 혈중알코올농도 < 0.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leq$ 혈중알코올농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	-	$0.03 \leq$ 혈중알코올농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요구불응(주취조종지시자포함)	5톤이상	1회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량 증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판단능력 저하 및 사고 위험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과 같이 경미한 주취 조종과 고도의 주취 조종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벌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판단능력 저하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고도의 주취 조종에 대하여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주취 조종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함.

유사한 입법례로 「해상교통안전법」은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처벌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역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기준으로 처벌을 세분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상에서의 안전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과 처벌체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주취 운전·조종에 관한 관련 법령 간 통일성을 높이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벌칙수준 비교]

구분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조종을 지시한 자			선박을 조종하거나 조종을 지시한 자			자동차등 운전자	
주취 조종 (운항, 운전)	5톤 이상	1회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톤 이상	1회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회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0.03%~0.2%)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0.03%~0.2%) 1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0.03%~0.2%)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6년 징역 또는 2천만원~4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5톤 미만	무 관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무 관	(0.03%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사항 없음
음주 측정 요구 불응	5톤 이상	1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 이상	1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1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4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1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4천만원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5톤 미만	무 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무 관	5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사항 없음

1) 총톤수 5톤 미만 예외 선박 존재: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 선박, 낚시어선, 유선·도선 등(「해사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하여 벌칙 조항을 세분화하고 있음.

이는 「해상교통안전법」이 이미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음주운항 처벌을 세분화하고 있고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 적용이 배제²⁾되는 등 관련 법체계상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선박의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 운항 환경과 위험성의 정도도 대형 선박과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처벌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의 음주 조종·운항에 관한 처벌체계를 총톤수 5톤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³⁾과 「납시 관리 및 육성법」⁴⁾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음주운항 처벌을 세분

안전법」 §41①, 「선박직원법」 §2 1호 단서)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납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4) 수면비행선박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218147)

화하는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다만,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40,392대 중 총톤수 5톤 미만이 38,921대로 96.4%를 차지하고 있어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며, 실제 음주단속 시에도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세분화된 처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5톤 기준) 현황]

(단위: 대/%)

구 분	누적등록 대수('26년 6월)	총톤수 5톤 미만		5톤~20톤 미만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40,392대	38,921	96.4%	1,471	3.6%

* 총톤수 20톤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박법」에 따라 관리

** 자료: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단속 현황(최근 5년)]

(단위: 건)

구분	2026 (6월 기준)	2025	2024	2023	2022	2021	계
단속건수	1	1	9	6	8	14	39
5톤이상	-	-	2	-	1	-	3

*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벌칙조항 세분화 기준은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및 법체계상 합리성과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자' 외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 대상 확대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지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을 지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법률들이 선장(운항책임자)이 존재하는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는 운항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친구·가족·동호회원 등 일반인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박과 같은 직업적 지휘·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타인에게 조종을 지시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실제로 '조종하게 한 자'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개별법에 별도 규정 없이 「형법」 5)에 따른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처벌 가능 여부를 해당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알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개정의 실익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처럼 명시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현행 금지 의무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요건을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27조제1항은 금지 행위를 '조종'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조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반의 대상이 되는 의무 자체

5)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중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② 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처벌하는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함.

유사입법례인 「해상교통안전법」과 「낙시 관리 및 육성법」도 금지의무 규정을 두고 이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벌칙 규정에 '조종하게 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금지의무 규정인 제27조제1항에도 이를 함께 명시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및 개정안의 금지의무 및 처벌 규정 비교]

구분	금지의무	처벌 조항
해상 교통 안전법	(제39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제39조제1항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을 처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0조제1항)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제30조제1항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를 처벌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안	(제27조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 (조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의무에 없음)	(제27조제1항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를 처벌

셋째, 개정안은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형 확정 후 10년 이내 재거부에 대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행 단속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재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측정 불응에 따른 처벌 대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자' 외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도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 거부 처벌 규정의 목적은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본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님.⁶⁾

개정안에서 '조종하게 한 자'의 처벌 요건은 지시자 본인의 음주 여부가 아니라 조종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이므

6)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로, 지시자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 처벌 요건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측정 불응 벌칙 대상에 '조종하게 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음주측정 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참고로 「낙시 관리 및 육성법」도 제30조제1항의 금지의무 규정에는 '조종하게 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음주측정 거부 처벌 규정⁷⁾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은 측정 불응에 따른 처벌 대상 중 조종자 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은 공무원이 아직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벌 요건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자'로 규정하면 측정을 거부한 자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7)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측정 거부 단계에서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함.

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따라서 현행법 제61조제4항제4호⁹⁾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¹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합해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주취 조종 금지 위반 및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한 재위반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 제한

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9)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없는 재범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¹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전과도 10년 이내 재위반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의 경우 부칙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별 벌칙 세분화 및 재위반 가중처벌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장과 선원 간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는 선박과 달리 친구·가족 등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종하게 한 자’가 문제 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체계를 구

11)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2헌가10 결정

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대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세분화·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전 안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²⁾

1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신 설>

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총톤수 5
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u>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u> <u>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u>5. ~ 7. (생 략)</u>	<u>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u> <u>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u> <u>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u> <u>지 아니한 자</u> <u>5. ~ 7. (현행과 같음)</u>
---	--

문 의 처
02)6788-5425